

등록번호	교육지원과-3056
등록일자	2015.3.23.
결재일자	2015.3.25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★주무관	도서관정책팀장	교육지원과장	주민자치국장	부구청장	구청장
김소연	김인호	김판덕	이경현	조인동	03/25 문석진
협 조		정책기획담당관	임근래		
		규제개혁팀장	김정현		
		주무관	김오녀		

##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

추진근거	대내(외) 협력 현황			사업비
	기관·부서·단체명	협의내용	협의결과	
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법제사무처리 규칙」 제3조	정책기획담당관	행정규제심사	개선권고내용 반영	없음
	감사담당관	부패영향평가	해당사항 없음	
	여성가족과	성별영향분석평가	개선권고내용 반영	

서 대 문 구  
교육지원과

#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

등록규제와 인권침해 우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고,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삭제하여 도서관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함.

## □ 관련근거

- 「도서관법」 제43조(도서관의 책무)
-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6조(개인정보의 수집 제한)

## □ 개정이유

- 도로명 주소 변경과 다문화자료실, 장애인정보누리터 신설, 대출권수 확대 등을 반영하여 도서관 이용의 편의성 제고
- 등록규제로 지적된 시설의 사용 승낙의 취소 규정을 보완하고, 입관의 제한 사유 중 장애인의 인권 차별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법규의 예측성과 공정성을 강화
- 민간위탁기관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준용하여 법규 간의 통일성 확보
- 도서관 이용 관련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삭제하여 개인 정보 보호 강화

## □ 주요 개정내용

### 1 조례 개정내용

- 구립도서관의 도로명 주소를 변경함(안 제2조)
- 시설 사용승낙의 취소 규정을 보완(안 제10조제1항 제4호, 제5호)
- 입관의 제한 사유 중에서 장애인의 인권 차별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(안 제17조)
- 모자열람실 명칭 변경, 다문화자료실과 장애인정보누리터의 신설과 복사 규격 현실화(별표 1, 2)

### 2 규칙 개정내용

- 비도서 이용 중 정보환경 변화에 따라 비치하지 않는 비디오테이프 등을 삭제하고, 어린이전자정보열람실 폐관을 반영(안 제2조)
- 도서관 이용 제한시 저작권법 준수, 유해정보 검색 제한 등 추가(안 제3조)
- 관외대출 가능권수를 3권에서 7권으로 확대(안 제5조)
- 민간위탁기관의 심사 및 위탁의 취소 조건 등을 삭제하고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준용함.(안 제6조~제8조, 제12조, 제14조~제15조)
- 도서관 이용 관련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 삭제 (별지 제1호~제6호)

## □ 추진 일정

- 입법예고 : '15. 3. 24 ~ 4. 13 (20일간)
  - 관련부서 사전협의 결과 및 법제심사 결과 반영
- 조례·규칙심의회 의결 : '15. 4월 중
- 서대문구의회 조례안 상정 및 의결 : '15. 5월 중
- 공포·시행 : '15. 6월 중

- 붙임 1.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일부개정  
조례안 1부.
2.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  
일부개정규칙안 1부.
3. 입법예고문 각 1부. 끝.